1. 특허법상 신규성 및 선출원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선출원주의에 있어서 전후로 출원된 양 발명이 동일하다는 것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하고, 비록 양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이다.

②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으로 구성된 특허발명에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의 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인정된다.

③ 대비되는 양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서로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양 발명이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등록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⑤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선출원주의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

2. 우선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심사의 신청이유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② 특허출원인이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의 대상이 자기 실시인 경우에도 출원공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허출원인 이외의 제3자도 우선심사의 신청인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에서 실시한 것을 자기 실시의 증거로 하여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심사관이 우선심사를 결정하여 우선심사에 착수한 후라도 그 출원에 대한 특허허여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우선심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 자원순환 및 친환경기술 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과 간접 관련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의 대상이다.

3.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협의 없이도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의약품과 관련된 사안은 보건복지가족부 관할이므로 의약품이 문제되는 경우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비상업적 실시를 조건으로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재정한다.

③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재정의 경우에는 대가 결정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취지를 참작할 수 있다.

④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협의 없이도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특허발명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실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발명의 출원일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그 재정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4. 특허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정각하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담당하는 심판관은 심사단계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더라도 특허출원인에게 별도의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거절결정의 자판(自判)을 할 수 있다.

②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 특허법원에서 취소되어 환송된 경우에 당해 환송사건을 심리하는 심판관은 출원인에게 의견제출기회가 주어졌다면, 종전과 다른 거절사유를 들어 또다시 등록을 거절하는 내용의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판관은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특허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저촉관계로 인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에 있어서 실시권자는 다른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⑤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심판을 청구하거나 취하하는 것이 가능하다.

5. 특허권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무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도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판매한 이후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리는 정정을 전·후하여 그대로 유지된다.

③ 특허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물건과 동일한 물건이 특허법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의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신규한 물건이라야 한다.

④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호의 물건의 발명에 대한 간접침해에서 '생산'이란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않고 가공, 조립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⑤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라도 특허권자는 소멸된 특허권에 터잡아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에 따른 특허침해금지 및 특허침해제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6. 선출원주의와 관련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선출원주의는 중복특허를 배제한다는 취지에서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복수의 출원이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ㄴ. 선출원주의에서 발명의 동일성 판단대상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만 기재되고 특허청구범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은 판단대상이 아니다.
ㄷ.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동일자 출원이라는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해당 출원이 공개되기 전이라면 재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ㄹ. 무권리자의 출원은 선출원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나 무권리자의 출원이라도 공개된 후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확대된 선출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ㅁ. 같은 날 동일인에 의하여 동일 발명이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동시에 출원되고 모두 등록된 경우에 특허등록은 무효이고, 그 중 등록된 실용신안권이 권리자에 의해 포기된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무효사유가 치유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7. 특허법상 분할 및 변경출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적법한 분할출원은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신규성, 진보성, 출원공개의 시기, 존속기간의 기산일은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ㄴ.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의 절차는 원출원절차에 종속되므로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청구가 없더라도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출원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ㄷ. 분할출원에는 출원일의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분할출원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선출원(父출원)에서 분할출원(子출원)을 하고, 다시 子출원으로부터 분할출원(孫출원)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ㄹ.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원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8.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특허권침해의 피해자가 침해죄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침해대상 물건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ㄴ.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특허권 직접침해의 예비단계 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를 특허권 직접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성 등에 비추어 간접침해행위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
ㄷ. 침해죄, 사위행위의 죄 및 허위표시의 죄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나, 법인 또는 개인은 그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다.
ㄹ. 작은 발명에는 작은 보호, 큰 발명에는 큰 보호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용신안권 침해죄는 특허권 침해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9.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특허의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특허발명이 정정심판의 결과에 의하여 정정된 경우 정정 후의 특허발명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선출원주의 위반을 이유로 한 특허의 무효심판 청구는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할 수 있다.

③ 후등록권리자가 선등록권리자를 상대로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부적법하나, 후등록권리가 이용발명인 경우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적법하다.

④ 특허의 무효심판이 상고심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재심사유가 된다.

⑤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선행기술이 어떠한 기술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0. 국내우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특허요건(법 제29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법 제32조), 선출원(법 제36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법 제103조)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을 선출원일로 소급한다.

②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의 현실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법 제59조), 특허권존속기간의 기산일(법 제88조), 재정청구가 가능한 기간의 기산일(법 제107조)을 적용할 때에는 현실의 우선권주장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③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의 선출원이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이중우선)에는 그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출원을 한 때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 다시 후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은 우선권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없다.

④ 적법하게 국내우선권주장을 한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2 이상인 경우 최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그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⑤ 출원인은 선출원일부터 1년 3월 이내에 선출원을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요건 등을 판단하고 그 선출원은 취하로 간주되지 않는다.

11.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출원서 등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한다.

②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언어로 국제출원이 출원된 경우 출원인은 국제조사를 위하여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번역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을 명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을 독일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청구범위의 보정서)에 의해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을 하는 경우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이 국제출원에서 요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보정을 명한 경우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당해 국제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소정의 기간내에 국제사무국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

1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후행발명이 선행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 선행의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가 균등물로 치환된 경우에도 이용침해는 성립한다.

② 물질의 의약용도 발명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에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는 대신 약리기전만을 기재하더라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 용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을 충족한다.

③ 특허출원인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를 받고서 거절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원출원의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보정을 하는 한편, 원출원발명 중 일부를 별개의 발명으로 분할출원한 사실이 있다면 위 분할출원된 발명은 보정된 발명의 보호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자는 특허된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⑤ 특허청구범위의 일부가 불명료하게 표현되어 있거나 그 기재에 오기가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오기임이 명백하여 그 발명 자체의 보호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

13. 특허권침해에 대한 권리자의 구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항에 따라 침해로 인해 감소한 특허권자의 특허물품 판매수량에 침해자가 판매한 침해물품의 단위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다.
ㄴ.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은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2항에 따라 특허권자의 손해로 추정되지만 침해자가 위와 같은 추정의 번복사유를 주장, 입증하면 위 추정은 깨질 수 있다.
ㄷ.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3항에 의하여 통상실시료 상당의 손해액이 추정되는 경우,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 위 추정된 손해액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ㄹ. 특허권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경우에 법원이 특허권자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이 요구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단, 각 출원은 2009. 7. 1.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ㄱ. 최후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으로 인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생긴 때에는 심사관은 보정각하를 하게 되나, 그것이 재심사 청구 전에 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각하를 할 수 없다.
ㄴ. 최후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 및 재심사 청구에 수반한 보정 시 구성요소의 직렬적 부가로 청구범위가 감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구범위가 변경되면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ㄷ. 보정이 신규사항추가에 해당하는 것은 등록거절의 이유가 되며, 일단 등록이 되었더라도 특허의 무효심판의 사유가 된다.
ㄹ.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의 재심사 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ㅁ. 최초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으로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을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15.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나 용도에 관한 발명도 원칙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

② 물건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물건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을 기재한 경우(Product by Process claim)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조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물건만을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면 된다.

③ 공지기술이 상위개념이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하위개념인 경우에는 상호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이 인정된다.

④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마쿠시(Markush) 형식인 경우에는 그 선택요소 중 일부라도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청구항은 전체로서 진보성이 부인되는 것이 원칙이다.

⑤ 발명의 진보성 판단자료가 되는 목적은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객관적인 목적과 발명자가 의도한 주관적인 목적을 모두 포함한다.

16.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물품종과 식물품종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시 도면의 제출이 없으면 출원인은 기준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특허청장의 도면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③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만 출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물질이 일정한 형상을 갖는 물품의 일부로서 다른 부분과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일정한 효과를 이루는 경우에는 물질이 포함된 물품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출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동일한 발명 A에 대하여 甲이 2008. 1. 1. 발명을 먼저 완성한 상태에서 乙이 2008. 3. 1. 우연히 독자적으로 발명을 완성하여 2008. 5. 1. 출원 후 2009. 5. 1. 특허등록까지 받았다면, 2008. 7. 1. A 발명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시작한 甲은 乙의 허락 없이도 사업목적 내에서 계속하여 A 발명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ㄴ. 동일한 발명 A에 대하여 丙이 2008. 1. 1. 발명을 완성하여 2008. 4. 2. 특허출원함으로써 2009. 3. 16. 등록이 이루어졌고, 丁이 우연히 독자적으로 2008. 2. 1. 발명을 완성하여 2008. 5. 2. 특허출원함으로써 2009. 4. 1. 특허등록을 받았다가 丙이 선출원주의 위반을 이유로 丁특허에 대해 2009. 10. 1.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결국 특허무효되었다면 丙발명의 선출원을 모르고 2008. 7. 2.부터 국내에서 A 발명품의 실시사업을 해 온 丁은 사업목적 내에서 A 발명품을 계속 생산·판매할 수 있다.

ㄷ. 甲이 자신의 특허권에 대하여 乙에게 질권설정을 한 후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甲이 乙에게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자 乙이 질권을 행사하여 특허권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져 丙에게 이전등록이 되었다. 이 때 甲은 丙에 대하여 위 발명에 대한 법정통상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ㄹ. 특허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인 경우, 반도체기술에 대하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ㅁ. 甲이 발명 A에 대하여 2008. 2. 5. 특허출원하여 2009. 7. 3. 특허등록되었고, 乙이 이와 저촉관계에 있는 디자인에 관하여 2008. 4. 3. 출원하여 2009. 2. 12. 디자인등록되었다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면 乙은 甲의 특허발명 A에 관하여 법정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ㄹ, ㅁ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의 발명 A를 도용한 乙이 2008. 5. 9. 발명 A를 특허출원하여 이후에 등록되었고, 乙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乙의 특허권이 2009. 8. 25. 특허무효라는 심결이 확정된 후 甲이 2009. 9. 18. 발명 A를 특허출원하여 등록된 경우, 甲의 특허권은 2028. 5. 9. 까지 존속한다.

② 특허권의 연장등록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 연장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연장등록에 의한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③ 甲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하였다는 이유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 연장등록이 되었다가 甲의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이해관계인 乙은 당초 甲의 특허발명 실시에 허가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甲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지 않으면 연장등록거절결정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사유가 된다.

⑤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만 미친다.

19. 특허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할출원의 경우 분할출원일부터 1년 6월을 기준으로 출원공개가 이루어지거나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출원공개가 이루어진다.

②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는 특허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법 제127조), 생산방법의 추정(법 제129조), 과실의 추정(법 제13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③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된 후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특허권의 설정등록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④ 국제출원은 국제공개의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또는 국제출원이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표현이나 도면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공개 되지 않는다.

⑤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지난 때에 출원공개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한 보상금청구권은 설정등록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20. 특허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미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나, 다만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특허출원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에 대하여 특허청장은 출원인에게 반환받을 것을 통지해야 하며, 출원인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제79조(특허료) 제3항 또는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허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하며,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특허출원의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 국제특허출원인이 아닌 제3자는 특허협력조약(PCT) 제2조의 우선일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심사청구 할 수 없다.

④ 국내우선권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후출원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되어야 하며,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 이내에는 국내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있다.

⑤ 특허출원인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라면 언제든지 그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2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표권자(청구인)가 계쟁대상물인 확인대상표장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만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표장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전용사용권자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확인을 구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이며, 심판청구인이 실제로는 확인대상표장과 다른 표장을 사용한 사실도 있다는 사정은 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등록취소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상표권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심판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취소심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⑤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22.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이해관계인만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외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상표권의 침해자가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시키고 또 그로 인하여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등록취소심판 청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23. 상표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표권의 공유에도 상표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②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그 상표권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상표권의 공유자가 그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④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상표등록원부에 공유상표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표권자 중 일부가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그 포기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공유자들이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는 것은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24. 식별력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의미한다.

②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와 다른 식별력 있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표의 식별력 유무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외국의 여러 나라에 등록된 외국의 상표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관용하는 표장이 될 수 있다.

④ 종자산업법에 의해 품종의 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은 등록됨과 동시에 그 품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으로 인정된다.

⑤ 상표권자가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등록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25. 사단법인 진도홍주연합회는 지정상품인 “홍주”에 대하여 “진도홍주”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았다. 사단법인 진도홍주연합회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단법인 진도홍주연합회는 등록된 “진도홍주”의 출원일 이전에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인 “곰표 진도홍주”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인 목포의 홍주 생산자가 지정상품인 “홍주”에 대하여 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인 “진도홍주”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② 사단법인 진도홍주연합회는 정당한 권한없는 타인이 등록된 “진도홍주”를 지정상품인 “홍주”뿐만 아니라 그 유사상품인 “소주”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다.

③ 사단법인 진도홍주연합회는 정당한 권한없는 타인이 등록된 “진도홍주”와 유사한 상표인 “신 진도홍주”를 지정상품인 “홍주”뿐만 아니라 그 유사상품인 “소주”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다.

④ 진도에서 홍주를 생산하는 업자인 홍길동이 진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비법과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제조한 “홍주”에 대하여 “코끼리표 진도홍주”라는 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단법인 진도홍주연합회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주장하여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⑤ 제주도의 어느 한 지명인 “진도”(실제 있는 지명이 아니라 가정해 본 지명이다)가 홍주라는 상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에 해당한다면, 사단법인 진도홍주연합회는 제주도 진도에서 그 전통방식에 따라 홍주를 생산하는 업자가 “제주도 진도홍주”라고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26.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부정한 목적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본호는 상표가 외국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졌다면 국내의 수요자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적용 가능하다.

② 본호는 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주지·저명한 정도로 인식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 정도라면 적용 가능하다.

③ 본호에서는 상표의 동일·유사성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④ 본호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⑤ 본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27.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부품인 에어 클리너를 제조하면서 그 포장상자에 자동차 제작회사의 등록상표의 표시를 하였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출처표시가 명백하고 부품 등의 용도설명이나 에어 클리너가 사용되는 적용차종을 밝히기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

③ 명함의 이면, 거래명세서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상표가 표시된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28. 상표권의 행사와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남용 성립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② 비록 상표권의 행사라는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③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될 수 없다.

④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한 상표의 경우에는 특수한 개별적인 관계에서 부정한 의도가 존재하거나 경업금지의무 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와 같이 상표권의 행사가 신의칙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라도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면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외국법인이 국내에 상표등록을 하고 있지 않음을 기화로 국내 총판대리점 관계에 있던 회사가 그 상표들을 출원·등록해 놓았다가, 그 외국법인과의 총판대리점 관계가 종료된 후, 등록상표들을 실제 상품에 사용하지도 아니하면서 그 외국법인의 국내 출자 법인을 상대로 등록상표권을 행사하여 그동안 정당하게 사용해 오던 상표나 이를 포함한 표장을 인터넷 도메인 이름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등록상표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9. 상표법상 서적의 제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서적의 제호가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가 되기 위해서는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또한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하는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② 한자로 "生活情報"라고 횡서 표기한 문자상표의 경우, "생활정보"라는 용어는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을 전달하는 뜻이 있으므로 지정상품인 잡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능이나 용도 등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판단되므로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결여한 것으로 그 등록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③ 영어참고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영어실력기초"의 경우 "영어", "실력", "기초" 등의 단어는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기술적 표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는 기초적인 영어교과서'로 인식되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④ 서적, 팸플릿, 녹화된 콤팩트 디스크(음악이 아닌 시디)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Linux"의 경우, 지정상품의 내용이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임을 암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상품에 수록된 창작물의 내용이나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제목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거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⑤ 타인의 등록상표를 정기간행물이나 시리즈물의 제호로 사용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태양, 사용자의 의도, 사용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제호의 사용이 서적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다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

30.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국가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모욕하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출원상표 "JAMES DEAN"은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고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검은 색 바탕에 흰 오선을 긋고 그 위에 단순히 "MOZART"라는 고인의 성명 자체를 기재하여 출원·등록된 상표는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흑인의 도형과 "DARKIE"라는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흑인종족을 비방, 모욕,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④ 등록상표 "인디안"은 지정상품인 건과자, 아이스크림과의 관계에서 특정국가, 민족을 비방, 모욕 또는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⑤ 신사복 등 의류에 관한 "CARDINAL"이 카톨릭의 추기경을 의미하는 뜻이 있더라도 영어권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에게 추기경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고, 출원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과 지정상품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볼 때 카톨릭 종교를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31.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약당사국에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 그 디자인공보가 발행된 후, 대한민국에 그 디자인에 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한 벌 물품의 디자인과 그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일부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 각각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그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일부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공보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기간이 경과된 후가 아니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수 없다.

⑤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후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밀디자인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32. 디자인보호법상 보정 및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하는 자는 디자인보호법 제8조(신규성상실의 예외)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정을 하는 때에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를 취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도면에 대해 보정할 수 있다.

③ 2 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하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후가 아니면 보정을 할 수 없다.

④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에 '저고리'에 관한 디자인이 기재되고 디자인등록출원서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한복'이라고 기재된 것을 '저고리'라고 물품 명칭을 변경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이 된다.

⑤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에 대해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33. 디자인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심판장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불복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당해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에 대하여 그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2조(한 벌 물품의 디자인)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심판관은 당해 출원에 대해 원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④ 甲과 乙의 공동출원에 대해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된 때, 甲이 대표자로 선정되어 특허청에 신고한 때에는 甲은 단독으로 그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심판장은 그 청구서의 부본을 디자인권자 및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4.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디자인무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당해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디자인의 설명 등이 게재된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 발행일 후 3개월까지이다.

②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③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부본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5.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 중 디자인의 설명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② 정부는 등록디자인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수용하거나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기재된 물품의 표면에 표현된 문자가 정보전달 이외에 물품의 장식을 위하여도 사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문자를 포함하여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한다.

④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장치를 업으로서 수입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디자인권자는 그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자기의 디자인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36. 디자인보호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디자인보호법 제50조의 2)은 실시사업과 함께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디자인권자가 자기의 디자인권에 대해 전 범위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의 이전,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질권의 설정에 대한 동의권만을 가진다.

④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공유인 때에는 각 통상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및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자기의 통상실시권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전용실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의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37. 다음 중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

| |
|---|
| ㄱ. 투명한 용기에 담아 그 전체적인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파악할 수 있게 한 칵테일음료 |
| ㄴ. 형상이 연속하는 털실 |
| ㄷ.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되어 일정의 형상을 유지할 수 없는 아이스캔디 |
| ㄹ. 입상물을 고형화한 고형사탕 |
| ㅁ. 사각형태로 접은 형상 및 모양의 와이셔츠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38. 부분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문 중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모두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다)

① 경제적으로 한 개의 물품으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부품에 대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②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전체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상호간에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부분디자인 여부란을 설정하지 않고 디자인등록출원한 후에 부분디자인 여부란을 추가하는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④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전체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간에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
⑤ 부분디자인이 표현된 전체디자인이 공지된 사실을 가지고 당해 부분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서 디자인보호법 제8조(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9. 유사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설문 중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모두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다)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이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중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유사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자기의 기본디자인과 그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자기의 공지디자인에 모두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자기의 유사디자인이 설정등록된 후에 출원된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때,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등록유사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있다.

⑤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중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40.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설문 중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모두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다)

①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각 물품의 형상 및 모양이 모두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일부 물품이 공지된 경우, 그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공지된 구성물품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일부 물품의 디자인만이 디자인보호법 제6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복수의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그 하나의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하고, 다른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⑤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그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가운데 일부를 타인이 실시하는 경우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